

이 자료는 12월 14일(목) 11:00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실제 말씀은 별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

정례브리핑 모두 말씀

2006. 12. 14(목)

1. 고용동향 / 1
2. 한미 FTA 5차 협상 결과 및 향후계획 / 6
3. 정책성과와 통계간 괴리사례 점검 및
조치계획 관련 / 10
4. 부실채권 정리기금 실사결과 / 12
5. 「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」 추진현황(7) / 15
 -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및
수도권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·공장총량 배정 -

재 정 경 제 부

1

2006년 11월중 고용동향

- ☐ 먼저,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11월중 고용동향에
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<전체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>

- ☐ 06.11월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.7만명 증가하여
추세를 소폭 하회하였음(1~11월 평균 29.5만명 증가)
- 작년 11월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어 공공행정 분야
취업자가 6.9만명 크게 증가했으나,
 - 금년에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면서 동 분야에서 5.8만명
감소한 것이 취업자 증가폭이 제약된 하나의 원인임
- ☐ 다만,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
- 상용직이 05.5월 이후 18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인
39.5만명 증가하고,
 - 일용직이 03.12월 이후 35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인
11.9만명 크게 감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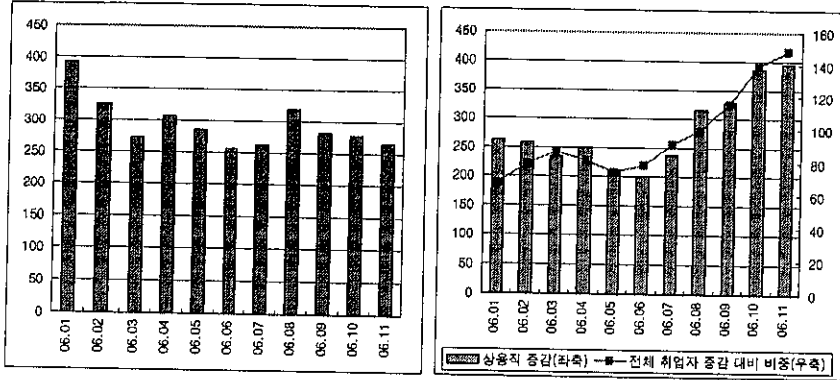
* 상용직 비중(임금근로자 대비, %)

: (02)48.4 (03)50.5 (04)51.2 (05)52.1 (06.1~11 평균)52.7

□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0.1%p 하락한 3.2%, 청년 실업률은 0.2%p 상승한 7.5%를 기록하였음

- 청년실업률의 경우 소폭 상승하였으나, 10월에 전년 동월비 0.7%p 크게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승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음

월별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 월별 상용직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, %)



<산업별 취업자 증감>

□ 취업자 증감 동향을 산업별로 보면, 서비스업은 작년 11월 큰 폭 증가(48.9만명)에 따른 반사효과에도 불구하고 31.3만명 증가하여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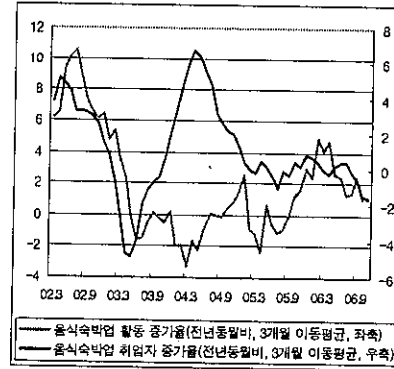
- 이는 10월 추석연휴 이동효과(작년 9월 → 금년 10월)에 따라 위축되었던 서비스업 활동이 11월에는 다시 정상흐름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

○ 세부 서비스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(+15.7만명), 교육서비스업(+7.7만명), 보건·사회복지업(+4.3만명)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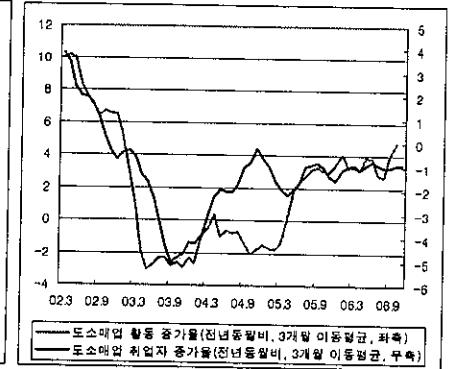
- 전통산업인 도소매업(△4.0만명), 음식숙박업(△2.1만명)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음

	05.3/4	4/4	연간	06.1/4	2/4	3/4	8	9	10
*서비스업 활동(전년동기비, %)	5.4	5.8	3.6	6.1	5.3	4.3	4.9	6.4	3.2
-음식숙박업 활동	△0.1	3.0	0.3	3.9	2.4	2.4	2.4	4.5	△4.0
-도소매업 활동	3.2	3.4	1.9	3.3	3.8	4.0	3.7	7.8	2.7

음식숙박업 활동과 취업자(%)



도소매업 활동과 취업자(%)



□ 제조업은 6.0만명 감소하여 IT화,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등에 따라 산업생산, 수출 등의 흐름과 괴리되면서 감소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임

* 최근 제조업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

: (06.4)△8.3 (5)△7.9 (6)△6.8 (7)△5.3 (8)△5.3 (9)△6.6 (10)△5.8 (11)△6.0

*산업 생산(전년동기비, %) 05.3/4 4/4 연간 06.1/4 2/4 3/4 8 9 10
 7.1 10.3 6.3 12.0 10.9 10.6 10.9 16.5 4.6

*수출(통관 전년동기비, %) 05.3/4 4/4 연간 06.1/4 2/4 3/4 9 10 11
 15.4 11.4 12.0 10.6 16.9 16.4 21.0 10.8 19.8

□ 건설업은 최근 건설기성 증가세 등을 반영하면서
 1.7만명 증가하여 소폭이지만 4개월 연속 증가하였
 으며,

○ 산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농림어업의 경우 0.7만명
 소폭 감소하여 최근 들어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임

*국내 건설기성(전년동기비, %) 05.3/4 4/4 연간 06.1/4 2/4 3/4 8 9 10
 3.8 6.9 5.7 5.8 1.4 6.4 3.4 16.0 7.4

<평가 및 전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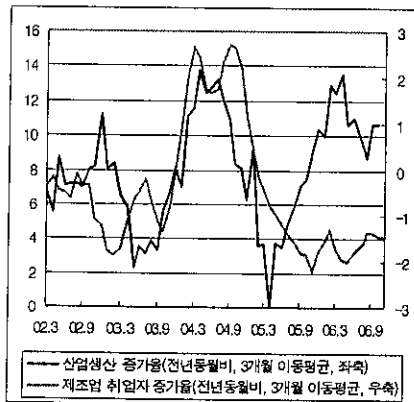
□ 11월에는 월별 증가폭이 '30만명 내외'에서 크게
 벗어나지 않으면서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는 금년의
 흐름이 계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

□ 한편, 아직 12월 고용동향(07.1월 중순 발표)을 지켜볼
 필요가 있으나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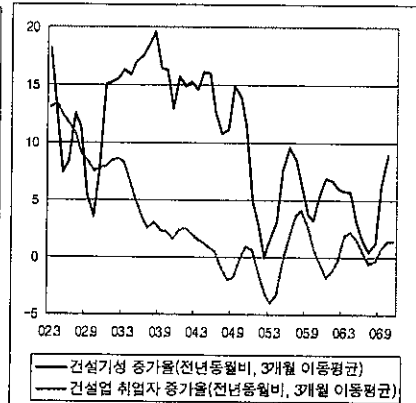
○ 11월까지 흐름으로 보면, 금년 전체적으로 취업자는
 전년대비 3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* 금년 12월의 경우 기저효과(05.12월 20.5만명 증가) 예상

산업생산과 제조업 취업자(%)



건설기성과 건설업 취업자(%)



1. 주요 쟁점사항

- 우리측은 금번 협상시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진전에 무게를 두고, 우리측 관심사항*을 금년말 美의회보고시 포함시켜 줄 것을 미측에 강력히 주장하였으나
- 미측이 현시점에서 확답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, 무역구제 분야 뿐 아니라 미측 주요 관심분야인 의약품 및 자동차 작업반 협상도 진행되지 못하였음
- 우리측은 미측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연말까지 무역구제분야의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노력할 예정임

- * ①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, ② 양국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, ③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와 협의, ④ 반덤핑 관세부과 유보(사전 가격 및 물량 조절), ⑤ Facts Available(미리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조사, 추가 자료 요구시 제출기한 연장) ⑥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 배제

2. 주요 진전사항

- 금번 협상에서 비록 무역구제/자동차/의약품 분과 협상이 중단되었으나, 상품무역/섬유/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일부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음
- 상품양허안에서 중간단계(3/5/10년) 품목에 대해 상호 개선된 양허안을 교환하였으며, 즉시철폐율이 양측 모두 80%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됨
- 미측 물품수수료 철폐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에게 연 4,700만불의 수수료 면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
- 차기 협상부터는 아직 U(기타)로 분류되어 있는 미측의 자동차, 우리측의 수산물·임산물 등에 대한 조기 관세 철폐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됨

※ 양측의 즉시철폐 비율 변화

	즉시철폐	개선전	개선후
미국	품목수 기준	77.4	80.3
	수입액 기준	60.5	62.1
한국	품목수 기준	80.1	82.5
	수입액 기준	74.8	76.3

- 4차협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섬유분야의 경우, 128(금) 워싱턴에서 별도의 차관보급 회담을 개최하여
- 상대국 관심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협상의 기본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둠
- 차기 협상부터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

- 농산물 분야에서는 **비민감 품목에 대한 양측간 합의를 확인**(총 1,531개중 1,030개)하고 품목별(쌀 제외 곡물류, 축산물, 과실류, 채소류 등) 양허협상을 진행 하였음
- 앞으로도 쌀 제외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한편, 여타 민감품목에서도 최대한 민감성이 반영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 나갈 것임
- 서비스/투자 분과에서는 양측 수정유보안에 대한 **명료화** 작업을 완료하였고,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요구하였음
- 차기 협상부터는 **핵심 관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** 진행될 예정인 만큼,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임
- 참고로 美 수석대표가 현지 브리핑시 **전력·가스 분야에** 관심이 크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나, 이는 공공성을 해하는 요구가 아님을 상호 확인하였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
- * 美수석대표가 공공서비스의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, 발전정비 등 전력·가스 공급에 부수적인 민영사업의 개방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됨
- 금융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제안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간 협력,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나
- 국채금융기관의 협정제외,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협의를 필요한 상황임

3. 평가 및 향후 계획

- 전체적으로 보면, 일부 분야에서의 협상중단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됨
-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양국 모두 상대방 주요 관심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
- 경우에 따라서는 섬유분야에서와 같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점을 모색해 보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
- 제6차 협상은 2007년 1월 15일주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미정임
- 일부 분과(상품 및 원산지/통관 분과 등)는 회기간(inter-sessional) 회의를 6차 협상전에 개최할 예정임
-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

□ 우리부는 최근 교육부, 노동부,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성과와 통계가 괴리되고 있는 사례를 점검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

-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통계 탓을 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일부 시각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, 발표 내용과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음

□ 이번 발표 내용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할수록 객관적 상황이 좋아질수록 통계는 오히려 나쁘게 나오는 주요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한 것임

- 예를 들어, 정부의 방과후 학교 관련 지원금 등이 사교육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실제보다 크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

- 보다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통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,

* 방과후 학교 시범실시후 1인당 월과외비 지출액 감소(278개 시범 학교 대상) : (06.1/4) 15.8만원 → (06.2/4) 10.0만원

(각 연도 월 평균)

	03년	04년	05년	06년 상반기
1분위 보충교육비 지출(만원)	3.5	3.5	4.0	3.3
1분위와 10분위간 보충교육비 격차(만원)	19.4	22.3	25.3	29.5

-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발견자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인구 대비 암환자 비율(암유병률)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,

- 복지부를 중심으로 '조기 암 진단율', '5년 암생존율', '암조기검진 수검률' 등 조기검진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장·단기 보조지표를 생산하여 활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

	02년	03년	04년	05년
암조기검진사업 수검자(만명)	78.5	112.4	133.8	233.5
수검자중 암발견자(명)	823	885	919	1,675
총 신규 암발견자(천명)	110.1	114.8	118.2	123.7

□ 금번 발표의 취지는 무엇보다 이러한 일부 사례들로 인해 그동안 쌓였던 불필요한 오해를 풀고, 이번 기회에 정책담당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정책적 기준을 찾게 하는데 있었으며,

-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려고 했다거나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정부가 그동안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

□ 또한, 앞으로도 정책이 개발되면 될수록 이러한 괴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, 정책과 통계간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,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

□ 정부는 2002년에 다음과 같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음

○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채무가 97.2조원인 데 반해 자산이 28.2조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

○ 부족한 69조원을 25년간에 걸쳐 금융권이 특별 기여금으로 20조원을, 재정이 49조원*을 부담

* 예보채상환기금 : 45.7조원, 부실채권정리기금 3.3조원

□ 한편, 이러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상의 손실분담은 당시의 회수전망 등을 바탕으로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

○ 공적자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정기적, 부정기적으로 손실분담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『재계산제도』를 마련하였음

□ 정부는 그 동안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회수여건이 02년 상환대책 수립시보다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

○ 예보채상환기금과 달리 현금사정이 양호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줄이고자 처음으로 부정기적인 수시 재계산을 하였음

* 정기(매 5년 단위) 재계산은 2008년에 예정

□ 실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면 2006년 6월말 기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

○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유 자산의 가치가 증식됨에 따라 자산 평가액은 13조원, 부채는 3.9조원이며

○ 순자산 평가액 9.1조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4.1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평가됨

* 대우건설, 대우중기, 대우인터, 대우조선의 회수증가 평가액(06 평가액+02년 이후 회수-02년 평가액) : 6.8조원

□ 이에 따라, 정부는 우선 현행 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잔여 채무상환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부담을 줄이고자

○ 지난 2003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정부가 지원한 3.5조원중에서 3조원을 2007년에 반환받아 공적자금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임

참 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실사 결과 요약 및 조치계획

1. 실사 결과

① 06.6말 기준 자산(A) : 총 13조원으로 평가

- 현금성 자산 4.8조원, 주식 등 비현금성 자산 평가액 8.2조원

② 06.6말 기준 부채(B) : 총 3.9조원

- 채 권 3.2조원(단기 0.9조원, 장기 2.3조원), 기타 0.7조원

③ 06.6말 기준 순자산평가액(A-B) : 9.1조원

- 출연금 4.1조원을 제외할 경우 약 5조원

2. 향후 조치계획

① 07년중 3조원을 공적자금 상환*에 조기 활용

- *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의해 정부와 캠코가 체결한 약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 정부 출연금을 우선 반환

② 잔여재산* 처리는 잔여재산 처리방향 : 08년 정기 재계산시 종합 검토

- 가급적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모색

- *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자산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잔여 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하여 반환(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)

5

「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」 추진현황(7)

-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및
수도권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·공장총량 배정 -

- ☐ 이번주는 「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」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

- ‘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’ 및 ‘수도권공장 증설의 선별적 허용·공장총량배정’의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설명하고자 함

<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>

- ☐ 기업의 금융담보 기반 확대를 위해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를 도입하려 함

- (현황 및 문제점) 기업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동산의 경우 효과적인 공시방법이 없어 담보가치 활용이 제약

- * 선박, 자동차, 건설기계, 항공기 등 특별법령에 의해 동기가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

- (대책방향) 기업 동산, 채권, 무체재산 등도 등기를 통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동산 담보제 도입을 추진중임

□ 또한,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것임

- (현황 및 문제점)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상환기간이 대체로 단기인데다 자금운용의 안정성도 미흡
- (대책방향) 저당권을 증권화·세분화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은 대출여력을 조기에 회복하고, 기업에게는 장기자금 공급 가능

□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 도입·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분쟁해결 비용을 절감해 나갈 것임

- (현황 및 문제점) 정식재판 위주의 소송제도 운용으로 사건처리에 장기간이 소요
- (대책방향1) 영미법상의 약식재판(Summary Judgement) 제도 도입을 통해 간이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
 - 신용장지급청구 등 실질적인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, 변론절차, 판결서 작성 간소화 등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예정
- (대책방향2) 대체적 분쟁해결제도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)를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

- 기업관련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사 분쟁을 조정·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칭 “민사중재원” 설치를 검토중이며,
-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조서에 대해 조정기구의 성격을 고려, 선별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중

□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

- (현황 및 문제점)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,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을 통한 남소 억제 효과가 미약
- (대책방향)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확대(패소자 비용부담 확대 효과)하여 濫訴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임

□ 가압류 제도도 개선해 나갈 것임

- (현황 및 문제점) 소액채권으로도 기업의 고가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, 가압류 해제를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수 있는 재산도 현금으로 제한
- (대책방향) 가압류 이의절차 등을 통해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가압류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
 - 가압류 해제를 위한 공탁 재산도 금융기관 발급 보증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

- 기업투자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의 관리 지원을 위해 사전에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도입할 것임
 - (현황 및 문제점) 공정위 및 금감위만이 사전 심사청구제를 도입·시행중
 - (대책방향) 일반모델을 개발하고 타분야에도 확대 도입할 예정
-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
 - (현황 및 문제점)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제재·행정제재·민사책임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고, 기관간 중복조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
 - (대책방향)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제재수단을 구분하여 재배치하는 한편,
 -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(손해배상, 금지처분 등)을 활용하여 사전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

- 동의명령제(consent order) 도입을 통해 기업참여형 시정절차 마련을 추진중임
 - (현황 및 문제점) 위법성 판단 위주의 법집행으로 인해 기업부담을 초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, 탄력적 대응이 곤란
 - (대책방향)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위법상태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시정절차를 마련할 예정
-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과제는 장기과제로 관계부처 T/F를 통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, 경제5단체의 상시협의채널을 통해 기업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예정
 - 민법·민사소송법 등 기본법제와 관련되는 저당권 유동화 등 6개 과제는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* 법무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과제외에도 추가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'07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예정

<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·공장총량 배정>

- (수도권 공장의 선별적 증설 허용)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틀 속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·제한적으로 공장 증설 허용을 추진함

- 이러한 방향하에,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실사조사 등을 거쳐 07년 한시적으로 4개 업체*의 증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(06.12.7)

* LG 전자, 한미약품, 일동제약, 팬택

- 산자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

□ (수도권 공장 총량 배정) 06~08년 수도권 지역 공장 건축총량을 설정함

- 관계부처 협의,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을 1,224만㎡로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였음(9.29)

- 이번 공장총량은 지난 04-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㎡ 증가한 수준임

*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06년부터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을 총량제 대상에 신규로 포함시키면서 462만㎡를 추가 배정

□ 이상으로 지난 9월 28일 발표한 『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』을 7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 드렸음

-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

- 앞으로도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해 나갈 예정으로

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산업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